##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8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강선우·최종윤·정청래

조정식 · 김민기 · 김철민

이낙연・신동근・이규민

정춘숙・안규백・김경만

박성준 · 권칠승 · 김주영

홍기원 · 김교흥 · 권인숙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가 있는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 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 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지원을 위하여 권 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운영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